|  |  |  |
| --- | --- | ---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發改氣候[2013] 제279호국무원 각 부(위원회), 직속기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품질기술감독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2차 5개년계획 요강》에서 제출한 요구를 관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 사회의 대응의식을 제고하며 저탄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고 저탄제품의 인증활동의 규범화 관리를 위해《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이하《잠정방법》이라 함)을 발부하여 시행하기로 하니 자신들의 업무에 결부시켜 진지하게 관철 실시하기 바라며《잠정방법》실시과정에 봉착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즉시 피드백하기 바란다. 별첨:《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인감위2013년 2월 18일**별첨:****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제1장 총 칙****제1조**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온난화 기체 배출을 통제하고 저탄제품 인증활동을 규범화하며 저탄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정책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저탄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저탄제품이라 함은 그 동류제품이나 기능이 같은 제품에 비하여 탄소 배출치가 관련 저탄제품 평가 기준이나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저탄제품 인증이라 함은 탄소 배출치가 관련 저탄제품 평가기준이나 기술규범 요구의 합격여부를 평가하는 인증기구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국가에서는 통일된 저탄제품 인증 제도를 제정한다. 통일된 저탄제품 목록과 통일된 기준, 인증기술, 인증규칙을 실시하며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통일한다. 국가 저탄제품의 인증제품목록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서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조율해서 반포한다.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저탄제품의 인증활동과 종합, 조율 및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유관부서 및 지방정부 주관부서에서는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저탄제품 인증활동을 추진하고 저탄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제6조** 저탄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와 그 임직원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이나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2장 기구와 임직원의 자질****제7조** 저탄제품 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구(이하 인증기구라 함)는 합법적으로 설립한 기구로서 탄소배출 심사나 관련 확인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하였고《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와《인증기구 관리방법》등 관련부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국무원 인가감독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저탄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인증기구는 저탄제품 인증활동과 관련한 기술능력을 구비하는 동시에 국가기준 중 제품인증기구 기술능력 통용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저탄제품 인증 검측활동에 종사하는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검측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실험실은 저탄제품 인증 검측기술능력이 있고 검측 및 교정 관련 실험실 기능에 대한 국가기준의 통용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제9조** 이 방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증기구와 실험실은 인증, 검측 활동 후 1년 내에 중국 합격평가 국가인가위원회에 인가신고를 하고 그 인증, 검측 능력이 지속적으로 국가기준 중 인증기구와 실험실 기술능력 관련 통용요구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제10조**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이 방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증기구와 실험실 명부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제11조** 저탄제품 인증 확인활동에 종사하는 담당 임직원(이하 인증 확인 담당임직원이라 함)은 관련 인증제품의 생산과정, 기술기준, 인증방안과 온난화 기체 확인방법을 숙지하고 국가 인증인원 등록기구에 등록해야 인증현장 검사활동에 임할 수 있다.**제3장 인증의 실시****제12조** 저탄제품 인증규칙은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국무원 유관부서의 직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정과정에 반드시 국무원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3조** 저탄제품 인증은 제품에 따라 부동한 인증모델을 취한다. 인증모델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탄제품 인증규칙에 정한다.**제14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저탄인증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함)를 설립하여 인증기술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의 연구와 심사에서 관리부서와 협력하게 한다. 구체적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저탄제품 인증기술의 규범화와 저탄제품 인증규칙 초안 제출(2) 저탄제품 인증기술의 규범화와 저탄제품 인증규칙 초한 심사(3) 저탄제품 인증 실시과정의 중대한 기술문제 심사.기술위원회는 비 상설기구로서 국무원 유관부서, 업계협회, 기업대표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술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어 기술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을 책임지게 한다. **제15조** 인증기구에서는 이 방법과 저탄제품 인증규칙 규정에 따라 상응한 인증모식으로 인증해야 한다. **제16조**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이하 인증 의뢰인이라 함)는 인증기구에 저탄제품 인증을 의뢰할 수 있다. 인증 의뢰인은 저탄제품 인증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증기구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구에서 심사하여 인증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의뢰를 접수하고 이 방법과 저탄제품 인증규칙에 따라 인증해야 한다. **제17조** 인증기구에서는 실험실에 위탁하여 인증 의뢰인이 제출한 제품의 샘플을 검측하게 하고 실험실에서는 검측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저탄제품 인증 검측활동에 종사하는 실험실에서는 샘플을 검측하여야 하며 검측결과의 진실성, 정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측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검측과정과 결과의 소급가능성을 보장하며 인증기구를 협조하여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 **제18조** 인증기구에서는 인증전문직원을 파견하여 제품의 생산프로세스와 제출된 서류와의 일치성, 생산과정의 능률과 자료의 균형, 증거의 신뢰성, 생산하는 제품과 검측샘플의 일치성, 생산관련 에너지소모율 감시설비의 상태, 탄소 배출계산의 완벽성 및 제품 생산기업의 품질 보장수준 등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인증기구에서 실험실 검측과 현지 확인을 필한 후 인증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증 의뢰인에게 인증증서를 제시하고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와 인증담당 임직원은 그들의 인증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인증기구에서는 저탄제품 인증규칙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과 그 생산기업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한 방식과 일정한 간격으로 효과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요구에 부합하도록 통제하고 검증해야 한다. 추적검사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 현지 확인과 시장 샘플링검사를 포함한다.**제21조** 인증기구에서는 저탄제품 인증비용 수취기준, 제품 인증취득상황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저탄제품 인증결과 등 관련 데이터와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인증기구에서 인증활동 인가범위내의 자문이나 제품개발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증기구에서는 리스크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증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증기구에서는 위험기금이나 보험가입형식으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며 리스크기금이나 보험 가입기금 액수가 RMB로 5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제4장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제23조** 저탄제품 인증증서의 양식과 내용, 인증마크의 양식과 종류는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관리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24조** 저탄제품 인증증서에는 하기 기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증 의뢰인의 명칭, 주소(2) 제품 생산자의 명칭, 주소(3) 수탁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4) 제품의 명칭과 시리즈, 사양/마크(5) 인증의 의거(6) 인증 방식(7) 인증 결론(8) 증서 제시일과 유효기간(9) 증서 제시기관(10) 증서의 일련번호(11) 제품의 탄소 배출명세서와 그 별첨(12) 기재해야 하는 기타내용.**제25조** 저탄제품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저탄제품 인증규정에 따라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구에서는 저탄제품 및 그 생산기업에 대해 추적 검사한 상황에 근거하여 인증증서에 연차검사 유효상태 조회를 위한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26조** 인증기구에서는 저탄제품 인증규칙 관련규정에 의거하고 각종 상황에 근거하여 이미 제시한 인증증서를 변경, 말소, 임시중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27조** 저탄제품 인증마크의 양식은 기본도안과 인증기구 식별정보로 구성한다. 기본도안은 하기 그림과 같으며 거기의 ABCDE는 인증기구의 약칭을 대표한다. 저탄제품 인증마크 양식:(http://www.ndrc.gov.cn/zcfb/zcfbtz/2013tz/W020130319391642475508.pdf)**제28조** 저탄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는 증서 취득제품이나 그 최소 판매포장에 저탄제품 인증마크를 부착, 인쇄, 압축성형해야 하며 증서 취득제품의 광고, 제품소개 등 홍보자료에 저탄제품 인증마크를 인쇄할 수 있고 변형하지 않고 비례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29조** 저탄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는 반드시 저탄제품 마크 사용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인증마크의 사용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하고 제품이나 그 포장 및 광고, 제품소개 등 홍보자료에 저탄제품 인증마크를 정확히 표시하고 사용해야 한다.**제30조** 인증기구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증서 취득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31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저탄제품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위조, 변조, 도용, 매매,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감독 관리****제32조**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는 저탄제품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는 동시에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서에서는 그 직책에 따라 인증기구와 실험실에 대한 합법적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제33조** 중국 합격평가 국가 인가위원회에서는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인증기구와 실험실을 효과적으로 추적 검사해야 한다.**제34조** 중국 인증인가협회에서는 종업자격을 등록한 인증검사 임직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35조** 인증 의뢰인이 인증기구의 인증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구에 신소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36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저탄제품 인증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 고발할 권한이 있으며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는 반드시 조사하여 처리하는 동시에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37조** 저탄제품 인증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의 규정제도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제38조** 저탄제품 인증은 국가 유관부서의 인증비용 수취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제39조** 이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0조** 이 방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发展改革委、国家认监委****关于印发《低碳产品认证管理暂行办法》的通知**发改气候〔2013〕279号国务院各部委、直属机构，各省、自治区、直辖市发展改革委、质量技术监督局：　　为落实《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要求，提高全社会应对气候变化意识，引导低碳生产和消费，规范和管理低碳产品认证活动，特制定《低碳产品认证管理暂行办法》（以下简称《暂行办法》），现印发施行。请结合工作职责，认真贯彻实施。《暂行办法》在实施过程中有何问题和意见，请及时反馈。　　附件：《低碳产品认证管理暂行办法》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认监委　 　2013年2月18日附件： **低碳产品认证管理暂行办法****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应对气候变化，控制温室气体排放，规范低碳产品认证活动，引导低碳生产和消费，根据《中华人民 共和国认证认可条例》等有关法律法规和国家相关政策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低碳产品认证活动，应当遵守本办法。 　　**第三条** 本办法所称低碳产品，是指与同类产品或者相同功能的产品相比，碳排放量值符合相关低碳产品评价标准或者技术规范要求的产品。 　　本办法所称低碳产品认证，是指由认证机构证明产品碳排放量值符合相关低碳产品评价标准或者技术规范要求的合格评定活动。 　　**第四条** 国家建立统一的低碳产品认证制度。实行统一的低碳产品目录，统一的标准、认证技术规范和认证规则， 统一的认证证书和认证标志。 　　国家低碳产品认证的产品目录，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制定、调整并发布。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负责低碳产品认证工作 的组织实施、综合协调和监督管理。 　　**第五条** 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务院有关部门以及地方政府主管部门依据相关产业政策，推动低碳产品认证活动，鼓励使用获得低碳认证的产品。 　　**第六条** 从事低碳产品认证活动的机构及其人员，对其 从业活动中所知悉的商业秘密和技术秘密负有保密义务。 **第二章 机构与人员资质**　**第七条** 从事低碳产品认证的认证机构（以下简称认证 机构）应当依法设立，从事碳排放审定或者核查相关工作3年以上，并符合《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及《认证机构管理办法》等相关部门规章规定的条件，经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批准后，方可从事低碳产品认证活动。 　　认证机构应当具备低碳产品认证活动的相关技术能力， 并符合国家标准中关于产品认证机构技术能力的通用要求。 **第八条** 从事低碳产品认证相关检测活动的实验室（以下简称实验室）应当依法经过资质认定，方可从事检测活动。实验室应当具备从事低碳产品认证检测工作的相关技术能力，并符合国家标准中关于检测和校准实验室技术能力的通用要求。 **第九条** 符合本办法第七条和第八条规定的认证机构和实验室，应当在开展认证、检测活动后一年之内，向中国合格评定国家认可委员会申请认可，以保证其认证、检测能力持续符合国家标准中关于认证机构、实验室技术能力的通用要求。 　　**第十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确定并公布符合本办法第七条和第八条规定的认证机构和实验室名录。 **第十一条** 从事低碳产品认证核查活动的人员（以下简 称认证核查人员）应当熟悉相关认证产品的生产过程、技术标准、认证方案，以及温室气体核算方法，并经国家认证人员注册机构注册后，方可从事认证现场核查工作。 **第三章 认证的实施**　　**第十二条** 低碳产品认证规则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 理部门制定、公布。涉及国务院有关部门职责的，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意见。 　　**第十三条** 低碳产品认证针对不同的产品采取不同的认证模式。具体认证模式在低碳产品认证规则中规定。 **第十四条** 国务院发展改革部门和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组建低碳认证技术委员会（以下简称技术委员会）， 协助管理部门对涉及认证技术的重大问题进行研究和审议。 具体职责包括： （一）提出低碳产品认证技术规范、低碳产品认证规则制定或者修订的建议； （二）审议低碳产品认证技术规范、低碳产品认证规则草案； （三）审议和协调低碳产品认证实施过程中的重大技术问题。 　　技术委员会为非常设机构，由国务院相关部门、行业协会、企业代表以及相关专家担任委员。技术委员会下设秘书处，负责定期组织召开技术委员会会议。 　　**第十五条** 认证机构应当依据本办法及低碳产品认证规则的规定，采用相应的认证模式进行认证。 **第十六条** 产品生产者或者销售者（以下简称认证委托 人）可以委托认证机构进行低碳产品认证。 认证委托人按照低碳产品认证规则的相关规定，向认证机构提交申请书及所需资料。认证机构经审查符合认证条件的，应当接受委托，并依据本办法及低碳产品认证规则实施 认证。 　　**第十七条** 认证机构应当委托实验室对认证委托人送交的产品样品进行检测，实验室对检测结果负责。从事低碳产品认证相关检测活动的实验室对样品进行检测，应当确保检测结果的真实、准确，并对检测全过程做 出完整记录，归档留存，保证检测过程和结果具有可追溯性， 配合认证机构对获证产品进行有效的跟踪检查。 　　**第十八条** 认证机构应当委派专职认证核查人员，对产品生产工艺流程与相关提交文件的一致性、生产相关过程的能量和物料平衡、证据的可靠性、生产产品与检测样品的一致性、生产相关能耗监测设备的状态、碳排放计算的完整性以及产品生产企业的质量保证水平和能力等情况进行核查。 　 **第十九条** 认证机构完成实验室检测和现场核查后，对符合认证要求的，向认证委托人出具认证证书；对不符合认证要求的，应当书面通知认证委托人，并说明理由。 　　认证机构及其认证核查人员应当对其作出的认证结论负责。 　　**第二十条** 认证机构应当根据低碳产品认证规则的相关规定，采取适当合理的方式和频次，对取得认证的产品及其生产企业实施有效的跟踪检查，控制并验证取得认证的产品持续符合认证要求。 　　跟踪检查包括定期或者不定期的现场核查和市场抽样检测。 　　**第二十一条** 认证机构应当公开低碳产品认证收费标准、产品获证情况等相关信息，并定期将低碳产品认证结果采信等有关数据和工作情况，报告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 　　**第二十二条** 认证机构不得从事认证工作批准范围内相关的咨询和产品开发工作。 　　认证机构应当建立风险防范机制，对其认证活动可能引发的风险和责任，采取合理、有效的防范措施。认证机构可以采用设立风险基金或者投保的形式防范风险，风险基金或者保险金额应当不低于人民币500万元。 **第四章 认证证书和认证标志**　　**第二十三条** 低碳产品认证证书的格式、内容以及认证标志的式样、种类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统一制定发布。 　　**第二十四条** 低碳产品认证证书应当包括以下基本内容： （一）认证委托人名称、地址； （二）产品生产者名称、地址； （三）被委托生产企业名称、地址； （四）产品名称和产品系列、规格/型号； （五）认证依据； （六）认证模式； （七）认证结论； （八）发证日期和有效期限； （九）发证机构； （十）证书编号； （十一）产品碳排放清单及其附件； （十二）其他需要标注的内容。 　　**第二十五条** 低碳产品认证证书的有效期为3年。有效期届满前，应当依据低碳产品认证规则的规定进行再认证。认证机构应当根据其对获证产品及其生产企业的跟踪检查情况，在认证证书上注明年度检查有效状态的查询网址和电话。 　　**第二十六条** 认证机构应当根据低碳产品认证规则的相关规定，针对不同情形，变更、注销、暂停或者撤销已出具的认证证书。 　　**第二十七条** 低碳产品认证标志的式样由基本图案和认证机构识别信息组成，基本图案如下图所示，其中ABCDE代表认证机构简称：低碳产品认证标志式样（略见：http://www.ndrc.gov.cn/zcfb/zcfbtz/2013tz/W020130319391642475508.pdf）　　**第二十八条** 获得低碳产品认证的产品生产者或者销售者，应当在获证产品或者其最小销售包装上加贴、印刷、模压低碳产品认证标志。可以在获证产品广告、产品介绍等宣传材料上印制低碳产品认证标志，并可以按照比例放大或者缩小，但不得变形。 　　**第二十九条** 获得低碳产品认证的产品生产者或者销售者，应当建立低碳产品认证标志使用管理制度。对认证标志的使用情况应当如实记录和存档，并在产品或者其包装物上以及广告、产品介绍等宣传材料中正确标注和使用低碳产品认证标志。 　**第三十条** 认证机构应当采取有效措施，监督获证产品的生产者或者销售者正确使用认证证书和认证标志。 **第三十一条** 任何组织和个人不得伪造、变造、冒用、买卖和转让低碳产品认证证书和认证标志。 **第五章 监督管理**　　**第三十二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负责对低碳产品认证活动实施监督检查，发现违法行为的，应当依法进行查处,并通报所涉及的国务院有关部门。 　　国务院有关部门依据其职责，依法对认证机构和实验室进行监督管理。 　　**第三十三条** 中国合格评定国家认可委员会应当依法对取得认可的认证机构、实验室实施有效的跟踪监督。 **第三十四条** 中国认证认可协会依法对获得执业资格注册的认证核查人员进行监督管理。 　　**第三十五条** 认证委托人对认证机构的认证结论有异议的，可以向认证机构提出申诉，对认证机构处理结果仍有异议的，可以向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申诉。 　　**第三十六条** 任何组织和个人对低碳产品认证活动中的违法违规行为，有权向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举报，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第三十七条** 对于低碳产品认证活动中的违法行为，依照相关法律、行政法规和部门规章的规定予以处罚。 **第六章 附 则**　　**第三十八条** 低碳产品认证应当依照国家有关认证收费的规定收取费用。 　　**第三十九条** 本办法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负责解释。 **第四十条** 本办法自2013年2月18日起施行。 |